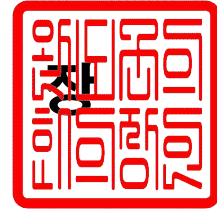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2. 발 의 자 : 최 정 욱 의원

3. 제정이유

-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경비의 지원(안 제6조)
-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시설의 위탁(안 제8조)

5. 관련법령 :

6. 조례안예고기간 : 2026. 2. 23. ~ 2026. 3. 3.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